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 구성에 성비(性比) 기준을 위반하여 3회 연속
개선 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 등의 명단 공개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54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원 구성에 성비(性比) 기준을 위반하여 3회 연속 개선 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 등의 명단 공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2.
3. 회 부 일 :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원 구성에 성비(性比) 기준을 위반하여 3회 연속 개선 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 등의 명단 공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여성가족부장관이 3회 연속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소속·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3회 연속하여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소속·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위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임. 이하 같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²⁾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통계포털(KOSIS)에 중앙행정기관(1984년도부터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2014년도부터 공개)의 여성 참여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3년도까지는 중앙행정기관별³⁾ 위원회 수와 위촉직 여성위원의 수를 각각 합산하여 공개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반기별로 소속 위원회·위촉직 여성위원의 수를 각각 공개하고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와 위촉직 여성위원의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4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위촉직 여성위원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당연직 위원은 법률, 대통령령 등 근거 법령에 직위를 기준으로 위촉(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임명)하며, 관계 법령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 또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1984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위원회 수와 여성 위원 수를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계만을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의 수를 공개함.

2023년 기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11개 중 119개(23.3%)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21,267개 중 6,557개(30.8%)가 개선권고를 받았음.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현황 >

구 분	여성 위촉직	위원회 수	
		전체	개선권고
중앙행정기관	3,485명(40.5%)	511개	119개(23.3%)
지자체	86,609명(42.6%)	21,267개	6,557개(30.8%)

주 1: 2023년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연속하여 3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34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3,231개에 달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선권고 현황(2024년 기준) >

(단위: 개)

구 분	1회('24)	2회 연속('23~'24)	3회 연속('22~'24)
위원회 수	97	63	34

자료: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개선권고 현황(2023년 기준) >

(단위: 개)

구 분	1회('23)	2회 연속('22~'23)	3회 연속('21~'23)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수	539	318	192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수	6,018	4,199	3,039
계	6,557	4,517	3,231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3회 연속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소속·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성별 대표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개정안은 위원회의 소속·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단의 의미가 해당 위원회의 명칭을 의미하는지, 소속 위원의 명단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해당 위원회의 명칭 공개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소속, 명칭 및 성별 참여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위원회의 명단의 의미가 소속 위원의 명단을 의미할 경우, 위원회 운영의 투

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성별 대표성 제고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의 명단 공개가 필요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심의, 평가나 선정 등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 현행법 제21조제3항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 제출, 공표 및 개선 권고 주기를 매년(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3회 연속하여 개선 권고 시 공개하도록 할 경우에는 성별 참여현황 제출 시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실무상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성별 참여를 조사하는 현황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조사주기를 6개월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조사주기를 1년으로 하여 조사하고 있는바, 조사주기에 차이가 있음.

성별 참여현황 조사주기의 차이는 개선권고 주기의 차이로 이어지

4) <2024~2025년도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일자	참석위원	심의안건(심의 결과)	방법
2024.04.26.~04.30.	위원장 등 총 45명	-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결과	서면
2024.09.25.~09.27.	위원장 등 총 45명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안) -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조사결과(안)	서면
2025.05.15.~05.19.	위원장 등 총 30명	-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조사결과	서면

자료: 여성가족부

고, 이는 다시 연속 3회의 개선권고가 누적되는 기간의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법령에서 성별 참여현황 제출시기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개선권고를 하여도 개정안의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위원의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행위, 품위손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위원회가 단기간 내에 성비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바, 개정안의 내용이 규제적 성격임을 감안하여 시행일 이후에 연속하여 3회 이상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방안 및 개정안의 적용에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중 법정 기준을 연례적으로 미충족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명단 공표를 통하여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개정안 중 위원회의 ‘명단’이 위원회 소속 위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입장이나, 위원 명단 공개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어렵거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우

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경우, 어업별 또는 지자체 간 어업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어업자⁵⁾, 업종·지역별 조합 대표⁶⁾ 등으로 구성되고 특정 성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상정되는 안건의 특성상 어업권 등 생계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게 되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피해 발생 및 분쟁 조정이 불가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위하여 법정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여가부가 중앙부처 소관 위원회 전체의 성별 참여 현황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상·하반기 기준 연 2회 공개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개정하는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3회 연속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회를 공개하는 경우, 위원회가 통상 2~3년 주기로 구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구성 시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공개 요건이 되는 개선권고의 누적 횟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어업자 통계>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숫자	33,349	8,426
비율	78.9	20.2

자료: 농림어업조사(통계청, 2024년도)

6) 수산협동조합 총 91개 중 1개소(제주 서귀포)만 여성 조합장으로 집계됨.

법제처는 개정안의 “위원회의 명단”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위원의 이름 목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 공개와 혼동되지 않도록 문언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이어서 개정안은 부칙에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 두고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시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 제21조 제4항에 따른 권고 횟수에 개정법률 시행 전 권고한 횟수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경기도 수원시는 특정 분야(과학, 예술, 교통, 기술)에서는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방적인 성비 조정은 위원회의 본 기능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의 명단 공개가 위원회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소속·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등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

경기도 부천시는 위촉직 위원의 법률상 기준 충족에 대하여 특정 성별 전문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야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타 지역 인재를 위촉하려 해도 물리적 거리 문제로 위촉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비 균형 달성을 우선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역량 있는 인재가 그로 인해 위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개정안 ‘명단’의 의미가 위원회 목록 공개의 의미인지,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의 의미인지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소속·명단을 공개’라는 법문의 표현을 ‘소속·명칭을 공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경상남도는 위원 구성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으나, 건축·토목 등 특정 분야의 경우 여성 인력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위원회의 성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명단 공개를 통한 결과 중심보다는 성별 참여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경상남도 함양군은 분야별·지역별 특성으로 법정 성비 요건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하게 존재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으나, 건축, 공사 등의 분야 또는 의료 분야 위원회의 경우 여성 전문가의 수 자체가 부족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여도 위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50